

『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(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·운영)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9일

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지원국장 지영목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는 2022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「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공모」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특화산업 접목·발굴 및 실증을 전담하는 센터를 구축하고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자 함

- 금오테크노밸리 내 스마트커넥트센터 3~4층에 메타버스 분야 종합 지원 센터인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인프라를 구축·운영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사용료 감면
 - 위 치 :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32길 8-26, 스마트커넥트센터 3~4층
 - 사용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 - 사용(감면)기간 : 2022. 11. 1. ~ 2024. 12. 31.(2년2개월)
 - 사용면적 : 1,696.34㎡(전용면적 1203.86㎡, 공용면적 492.48㎡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1항 4호,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 3항 20호,
제17조 5항 2의2호

○ 각종개요

- 스마트커넥트센터 개요
 -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32길 8-26(금오테크노밸리 내)
 - 건 립 비 : 126억원(도 37.8, 시 88.2) ※ 준공일 : '20. 11. 13.
 - 규 모 : 지상 5층, 지하 2층, 연면적 5,858.6㎡

- 건축물 용도 : 교육연구시설

- 운영방법

 - 건물 운영 및 관리 : 구미시(신성장산업과) 직접운영

 -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(주관기관)

-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·운영 사업 개요

-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32길 8-26, 스마트커넥트센터 3~4층

- 규 모 : 연면적 1,696.34m²

- 사업기간 : 2022. 7. 1. ~ 2024. 12. 31.

- 총사업비 : 180억원(국비 60, 경북 60(도 18 시 42), 기타 60)

- 사업내용 : 메타버스 실증지원, 지역 특화사업 발굴, 인재양성,
허브 인프라 구축 등

- 추진현황

 - 2022. 4. 29. :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·운영 사업 공고

 - 2022. 5. 30. : 사업계획 접수(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·운영)

 - 2022. 6~7월 : 발표평가 및 사업 선정

 - 2022. 7. 13. : 공유재산심의회 심의

- 향후추진계획

 - 2022. 10월 :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의회 동의

 - 2022. 11월 : 센터 구축 등 지원사업 추진

- 기대효과

 - (기술적) 메타버스 관련 기술기반 저변확대

 - (경제적)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기여

 - (사회적) 동북권 메타버스 산업 확대와 관련 중소기업 육성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○ 본 「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(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운영) 은,

- 2022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「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공모」에 선정됨에 따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사용할 금오테크노밸리 내 스마트커넥트센터 3~4층에 메타버스 분야 종합 지원 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(사용기간 : 2022.11.1. ~ 2024.12.31.까지, 총 감면사용료 142,387천원)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,
- 구미시의 출연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며, 메타버스 허브 인프라 구축·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